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363

발의연월일: 2025. 5. 2.

발 의 자:김도읍・이헌승・장동혁

인요한 • 이성권 • 조지연

정점식 · 조배숙 · 권영진

김미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.

그러나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의 점검 결과 일부 법인이 고용 장려금을 콘도회원권, 토지 구입 등 법인 자산축적 용도로 사용한 사 실이 확인되어 고용장려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.

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, 설립 목적상 장애인의 보호고용을 하 는 시설이므로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향상 등 복리증진 을 높일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고용장려금을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장애 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0조제2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을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. 사용처 및 용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제1호"를 "제1호 및 제2호"로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신설한다.

2.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용장려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에 관한 적용례) 제30 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용장려금을 받은 사업주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	제30조(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
급) ① (생 략)	급) ①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
	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
	재활시설을 설치・운영하는 사
	업주는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
	고용장려금을 장애인의 고용촉
	진과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
	정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해서만
	사용하여야 한다. 사용처 및 용
	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
	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u>②</u> ~ <u>⑤</u> (생 략)	<u>③</u> ~ <u>⑥</u> (현행 제2항부터 제5
	항까지와 같음)
제31조(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	제31조(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
급 제한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	급 제한) ①
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	
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	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	
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징수	
하여야 한다. 다만, <u>제1호</u> 의 경	제1호 및
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5배의	<u>제2호</u>
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	

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여 야 한다.

1. (생략)

<u><신 설></u>

2. (생략)

② ~ ④ (생 략)
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용장려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
- <u>3.</u> (현행 제2호와 같음)
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